

인천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2135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1. 4. 8.

판결 선고 2021. 6. 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57,573원 및 그중 87,621,610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C이 2019. 9.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9. 25. 접수 제522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 7. 4. 위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5. 7.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위 보증기한은 2020. 6.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10. 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0. 2.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87,621,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2020. 2. 13.부터 2020. 2.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16,053원, 원고가 대위변제 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619,910원이다.

라. 피고 B은 E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E가 지정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9. 9. 11.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2,8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9. 25.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9. 25. 접수 제52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57,573원(= 대위변제금
87,621,610원 + 지연손해금 216,053원 + 집행보전비용 619,910원) 및 그중 원금
87,621,61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20. 3.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0. 2. 13.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0. 1.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갑 제15호증의 2, 4,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아산시 F, G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1억 원,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H에 대한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I에 대한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E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이 2019. 9. 11. 피고 C에게 위 F, G 토지를 1,631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러한 공동담보의 감소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E가 2017. 4. 24.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장기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E의 지인이자 기존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에게 E에 대한 차용금 상환여력이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화정

별지